



【검토보고서】

2015. 9. 21(월)
제 261 회 임시회

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【전문위원 최영인】

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양주시장(문화관광과)
- 제출일 : 2015년 9월 7일
- 검토일 : 2015년 9월 8일

2. 제안이유

- 장흥관광지 내 관람시설 ‘장흥조각공원’이 ‘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’에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장흥관광지 관람 징수 조례 개정

3. 주요내용

- 장흥조각공원 관람료 삭제 및 단서조항 일부 삭제 (안 제5조 별지)
- 관람 및 시설이용권 서식 개정(안 제5조 별지)

4. 검토의견

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양주시에서 장흥관광지내의 설치한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
- 개정안에서는 조각공원을 장욱진미술관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정책결정됨에 따라 장흥조각공원의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나. 정책검토

- 양주시에서는 장흥 조각공원과 장육진미술관을 통합하고 조각공원을 장육진미술관의 부속시설로 운영하고자하는 것이나 조각공원은 2007년 개장한 이래 매년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인지도 있는 시설로 조각공원을 이용해 온 사람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
- 양주시에서도 조각공원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홍보자료가 다수 있을 것으로 관련 자료의 정비대책도 강구할 필요함.

시설명	양주시립장육진미술관	장흥조각공원
위 치	장흥면 권율로 211	장흥면 권율로 193
규 모	연면적 1,851.58㎡(지하1층/2층/별동) 부지면적 6,204㎡	부지면적 약 9,000㎡
개관일	2014. 4. 28.	2007. 7. 19.
입장객('14년)	30,366명 (유료 14,142, 무료 16,224)	102,404명 (유료 68,671 무료 33,733)
운영방식	시 직영	시설관리공단 위탁
인력현황	직원(계약직) 4명, 기간제 3명	일반직 2명, 업무직 2명

다. 형식검토

-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라. 절차검토

-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